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해외제조업소 등록 연장 및 제한규정 마련에 따른 정비(안 제2조, 제3조의5, 제12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 정비
- 현지실사 통보 후 등록 철회한 해외작업장에서 재등록 요청 시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가능토록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
- 등록 철회 요청한 후 재등록을 요청한 경우도 포함하여 현지실사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
-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의 인용조문 정비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근거 명확화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절차 마련(안 제4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우수수입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절차 마련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우수수입업소의 유효기간을 하려는 자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신청토록 절차 마련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우수수입업소 등록 연장 절차 마련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 3. 수입중단 해제근거 명확화에 따른 정비(안 제4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현지실사 후 중단 해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수입중단 및 해제조치 절차 및 중단 및 해제 시 공개조문 정비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수입해제 근거 명확화로 수입식품 사전 안전 관리 강화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4. 수입식품 전자 영업등록증 도입(안 제16조~제18조, 제21조)

#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수입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, 해당 영업소에는 영업등록증을 비치 및 민원 신청 시 원본 제출 의무
- 영업등록증의 훼손 분실 등을 예방하고, 변경 지위승계 폐업 시 원본 제출 부담 완화 필요

#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신규영업 등록 시 전자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에 따라 영업등록증 비치 의무 삭제 및 변경등록 지위승계, 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의무 예외 규정

#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# 라. 입법효과

- 영업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 및 정부의 민원처리 행정부담 감소

#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5. 통관단계 부적합 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(안 제34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통관단계 부적합 수입식품은 식용 사용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국 반송 다른 나라로의 반출 또는 폐기 대상이나,
- 농식품부 승인에 따른 사료용 및 공적 사용 목적에 한해 용도전환을 허용 중이며,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농식품부 승인에 따른 사료로의 용도전환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
-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에 따라 영업등록증 비치 의무 삭제 및 변경등록 지위승계, 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의무 예외 규정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부적합 식품에 대한 반송·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경감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6.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신청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(안 별표 14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등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, 검사 성적서의 경우 원본을 제출토록 규정
- 민원인은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위생증명서 신청이 가능, 선적 전까지 발급기간 촉박
-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관련 서류와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검사 성적서 사본도 제출서류로 인정하여 편의성 제고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수출신고필증 외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관련 서류도 인정하고, 온라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도 인정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위생증명서 등 발급 편의성 제고 및 신속발급으로 수출 활성화에 기여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